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주·야간보호센터)

[별지 제6호 서식]

주 간 보

(이용정원)

- 주·야간보호 : 24명 (정원외로 인지지원등급 2명 이용가능)

(이용대상)

- 주·야간보호 :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이용신청)

-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신청서
 2.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 검진 포함)
- 센터는 이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이용대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모집방법)** 서울요양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1.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2.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급여계약 등)

- ① 센터는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원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센터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센터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나 보호자에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비급여비용 등

⑥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한도액

2023.1.1.기준

등급	월 한도액(원)	본인부담금(원)			기초생활 수급권자
		일반	감경		
		15%	9%	6%	
1등급	1,885,000	282,750	169,650	113,100	면제
2등급	1,690,000	253,500	152,100	101,400	
3등급	1,417,200	212,580	127,548	85,032	
4등급	1,306,200	195,930	117,558	78,372	
5등급	1,121,100	168,165	100,899	67,266	
인지지원등급	624,600	93,690	56,214	37,476	

-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월한도 금액으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된다. 다만,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 재가급여는 일반 대상자의 경우는 이용한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40% 감경 대상자는 이용한 급여비용의 9%, 60% 감경대상자는 이용한 급여비용의 6%를 본인이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②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2023.1.1.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03시간 이상 - 06시간 미만	38,630	35,760	33,010	31,510	30,000	30,000
06시간 이상 - 08시간 미만	51,780	47,960	44,270	42,770	41,240	41,240
0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4,400	59,660	55,080	53,580	52,050	52,050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70,950	65,720	60,720	59,190	57,690	52,050
13시간 초과	76,080	70,480	65,110	63,600	62,100	52,050

③ 비급여 항목

2023.1.1.기준

구분	세부내역
식재료비 (중식비)	1식 2,500원
식재료비 (중식비)	1식 1,000원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로 회신 해야 한다

② 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2.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퇴소) ① 센터는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 이용자가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센터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센터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4. 이용자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5. 이용자의 주소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6.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7. 그 밖에 센터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 이행의무